

# 검 토 보 고

## 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의2(인사청문회)의 규정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예산군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조례에 위임된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운영(안 제3조)
- 인사청문의 방법(안 제4조~안 제19조)
- 준용규정(안 제20조)

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의2
  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
  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
  - 「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3조
  - 「공직자윤리법」 제4조

- 「형사소송법」 제148조, 제149조
- 「국회에서의 증원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○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○ 그 밖의

가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나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24. 3. 5. ~ 3. 11.)

다.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라. 성별영향평가 : 의견없음(2024. 1. 26. 가족지원과)

## 4. 검토의견

○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,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의 일환으로 인사청문회의 규정이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의2(인사청문회)에 신설됨에 따라 예산군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조례에 위임된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한 것임.

○ 조례 조문항을 보면

조 문	조 문
제1조 목적	제11조 위원장의 보고
제2조 정의	제12조 자료제출 요구
제3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	제13조 자료의 검증
제4조 인사청문	제14조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지원
제5조 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	제15조 인사청문회의 공개
제6조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	제16조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
제7조 위원의 질의 등	제17조 답변 등의 거부
제8조 증인등의 출석요구	제18조 제척과 회피
제9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등	제19조 주의 의무
제10조 인사청문경과보고서	제20조 준용

위 조문항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

- 인사청문회 취지는 민주적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 소속 공직 후보자의 전문성 및 도덕성 등의 검증을 통하여 그 경영 능력과 자질이 입증된 사람이 해당 기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체장의 인사권력 남용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며 또한, 집행부와 의회의 권력분립의 원칙의 도구로써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.
- 이 조례를 통해 공정한 인사시스템의 도입, 민주적 가치 실현, 집행부와 협치를 위한 기반 마련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봄.
- 참고로 2024. 3. 7. 현재 86개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, 충청남도의 경우는 충남도의회와 5개 시군(공주시, 아산시, 서산시, 당진시, 태안군)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음.
- 본 조례안을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